

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견

의 안
번호

54

제출연월일 : 2002년 월 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 - 107호(2002. 11. 6)로 오창과학산업 단지내에 「오창외국인기업전용단지」가 지정됨에 따라, 외국인전용단지의 용지 취득사유가 발생하고
- 중부권 산림사료의 영구적인 보전 전사와 교육자료 제공 목적으로 우리지역 특색에 맞는 「산림박물관」 및 「생태체험관」 건립과
- 민원인과 직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차타워를 건립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재산의 취득

◀ 오창외국인기업전용단지 부지취득 ▶

- 위 치 : 청원군 옥산면 남촌리 1111-1(오창과학산업단지 내)
- 단지규모 : 165,290㎡(50,000평)
- 사업기간 : 2003. 1~2003. 12
- 사 업 비 : 22,046,000천원 (165,290㎡, 50,000평)
 - 국 비(90%) 19,841,000천원 (148,761㎡, 45,000평)
 - 도 비(10%) 2,205,000천원 (16,529㎡, 5,000평)

※ 지분취득

< 산림박물관 건립 >

- 위 치 :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20번지(산림환경연구소내)
- 규 모 : 부지 992㎡(300평), 연건평 1,653㎡(500평)
 ※ 지하 1층, 지상 2층
- 사업기간 : 2003. 1~2005. 12(36개월)
- 사 업 비 : 4,200,000천원(국비 2,100,000 도비 2,100,000)

< 생태체험관 건립 >

- 위 치 :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산 1-3 (산림환경연구소 내)
- 규 모 : 부지1,488㎡(450평), 연건평 1,617㎡(489평, 지상2층)
- 사업기간 : 2002. 11 ~ 2003. 12(14개월)
- 사 업 비 : 3,400,000 천원(국비 1,020,000 도비 2,380,000)

< 주차타워 건립 >

- 위 치 :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(청사내 신관북쪽주차장)
- 시설규모 : 2,763㎡(836평, 지하 1층, 지상 2층, 주차면 168면)
- 사업기간 : 2003. 1 ~ 2003. 12
- 사 업 비 : 815,602천원(도비 100%)

3. 예산상황

(단위 : 천원)

사 업 명	재산취득	재산처분	교환취득	교환처분	비 고
계	10,620,602 (도비:7,500,602)				
오청외국인기업전용 단지 용지매입	2,205,000 (도비:2,205,000)				
산림박물관 건립	4,200,000 (도비:2,100,000)				
생태체험관 건립	3,400,000 (도비:2,380,000)				
주차타워 건립	815,602 (도비:815,602)				

4.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: 별 첨

5. 관계법령 : 별 첨

- 지방재정법 제77조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
-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
-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

200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(7-2)

(단위 :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추정가액	취 득 시 기	취 득 사유	취득재산 전소유자 주소·성명	비 고
	지목	소 재 지	수 량					
계	토지	1 건	16,529㎡ (5,000평)	2,205,000 (2,205,000)				
	건물	2 건	3,270㎡ (989평)	7,600,000 (4,480,000)				
	기타	1 건	2,763㎡ (836평)	815,602 (815,602)				
1	토지	청원 옥산 남측리 1111-1 (오창과학산업단지내)	16,529㎡ (5,000평)	2,205,000 (2,205,000)	2003	오창외국인 전용단지용지	한국토지공사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2	토지							
	건물	청원 미원 미원리 20 (신림환경연구소 내)	1,653㎡ (500평)	4,200,000 (2,100,000)	2003. 1 - 2005. 12	산림박물관	신 축	
	기타							
3	토지							
	건물	청원 미원 미원리 1-3 (신림환경연구소 내)	1,617㎡ (489평)	3,400,000 (2,380,000)	2002. 11 - 2003. 12	생태체험관	신 축	
	기타							
4	토지	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청주 상당구 문화동 89 (침사내 신림북쪽 주차장)	2,763㎡ (836평)	815,602 (815,602)	2003. 1 - 2003. 12	주차타워	신 축	

※ 추정가액내 ()는 도비에산입

관 계 법 령 발 취

【지방세징법 및 동법시행령】

지 방 세 징 법	지 방 세 징 법 시 행 령
<p>제77조(공유재산의관리계획)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제84조(공유재산의관리계획)①법 제77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.</p> <p>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으로 한다.</p> <p>이 경우 토지에 있어서는 제2호에 규정된 면적 이하 일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 될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.</p> <p>1.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).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건물 및 기타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.</p> <p>2.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 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)</p>

【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】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	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
<p>제3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익년도 예산편성권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	<p>제29조(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)①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유재산관리계획서(별지 13호서식) 2 ~ 5호 생략